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웅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86

발의연월일: 2022. 9. 16.

발 의 자:노웅래·강병원·김영진

신영대 · 신정훈 · 윤미향

이병훈 · 이은주 · 이학영

이해식 · 전재수 · 정태호

홍영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형적이고 전통적인 직접고용관계를 전제로 근로자의 단결권·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해 왔음.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로인정하는 것이 대표적임.

그러나 현행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도급·위탁·파견 등 간접고용 영역의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. 최근의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임금교섭 및 파업 사례가 대표적으로, 이는근로계약의 당사자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·지배력을 가지는 자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간접고용 근로자는여전히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교섭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임.

한편,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민·형 사상 책임에서 면책됨. 그러나 그 범위가 협소하여 실제로는 쟁의행위 가 종료된 이후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압류·가압류 신청으로 노동조합의 존속과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실정임.

그러므로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자 함(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2 등).

법률 제 호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賃金·勤勞時間・福祉·解雇 기타 待遇등 勤勞條件의 決定에 관한 主張의 不一致"를 "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"로 한다.

2. "사용자"라 함은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請求할 수 없다"를 "청구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·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"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로서 그 사실을 사용자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그 행위가 노동조합의 지시 및 통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외에 노동조합의 임원·조합원, 그 밖의 근로자 등의 개인에게 배상 을 청구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·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. ③ 신원보증인은 「신원보증법」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,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조의2(손해배상액의 감면청구) ①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.
 - 1. 쟁의행위 등의 원인과 경위
 - 2. 손해배상 의무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한 정도
 - 3. 손해배상 의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
 - 4. 손해배상 의무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
 - 5. 손해배상 의무자의 재정 상태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2條(定義) 이 法에서 사용하는	第2條(定義)
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.	,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使用者"라 함은 事業主, 사	2. "사용자"라 함은 근로계약의
업의 經營擔當者 또는 그 사	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
업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	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
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동	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
하는 者를 말한다.	수 있는 자를 말한다.
3. ~ 4. (생 략)	3. ~ 4. (현행과 같음)
5. "勞動爭議"라 함은 勞動組合	5
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	
(이하 "勞動關係 當事者"라	
한다)간에 <u>賃金·勤勞時間·</u>	근로조건에 관한 주
福祉・解雇 기타 待遇등 勤勞	<u>장의 불일치</u>
條件의 決定에 관한 主張의	
<u>不一致</u> 로 인하여 발생한 紛爭	
狀態를 말한다. 이 경우 主張	
의 不一致라 함은 當事者間에	
合意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	
도 더이상 自主的 交渉에 의	
한 合意의 餘地가 없는 경우	
를 말한다.	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
用者는 이 法에 의한 團體交渉 또는 爭議行爲로 인하여 損害 를 입은 경우에 勞動組合 또는 勤勞者에 대하여 그 賠償을 請 求할 수 없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<신 설>

第3條(損害賠償 請求의 제한) 使 第3條(損害賠償 請求의 제한) ① 구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압 류 ·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. 다만,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서 그 사실을 사용자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 위로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그 행위가 노동조합의 지시 및 통 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외에 노동조합의 임원·조합원, 그 밖의 근로자 등의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하 <u>거나 그 재</u>산에 대하여 압류·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. ③ 신원보증인은 「신원보증 법」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단체 교섭,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

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.

<신 설>

- 제3조의2(손해배상액의 감면청구)
 - ①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 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.
 - 1. 쟁의행위 등의 원인과 경위
 - 2. 손해배상 의무자가 고의 또 는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 식한 정도
 - 3. 손해배상 의무자의 행위로

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
 - 4. 손해배상 의무자가 피해구제 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
 - 5. 손해배상 의무자의 재정 상태